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41

발의연월일: 2024. 9. 26.

발 의 자:송언석・구자근・권성동

정동만 • 김석기 • 강명구

정희용・김종양・김 건

임이자 · 정연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간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지금,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에 속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소득세까 지 부과된다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어 당장 가상자산에 대한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 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일"로 한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제2호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월 1일"을 각각 "2028년 1월 1

부칙 제20조제2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22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		
산) ① ~ ④ (생 략)	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5		
계산할 때 <u>2025년 1월 1일</u> 전	<u>2028년 1월 1일</u>		
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			
산의 취득가액은 <u>2024년 12월</u>	<u>2027년 12월</u>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	31일		
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			
으로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	제1조(시행일)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	2		
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			

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제4호, 제119조제12호타목·파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조제12항·제16항·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 4. (생략)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 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 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 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 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 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 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②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u>2025년 1월 1일</u> 이 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 터 적용한다.

<u>2028년</u>
1월 1일
3.·4. (현행과 같음)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
용례) ①
<u>2028년 1월 1일</u>
<u>.</u>
②
<u>2028년 1월 1일</u>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관한 적용례) ① (생 략)

②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 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u>2</u> 0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 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 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ㆍ제16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관한 적용례) ① (현행과 같
음)
②
<u>2</u>
028년 1월 1일
.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
한 적용례)
<u>2028</u>
<u>년 1월 1일</u>